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항이용객의 출입·통행 방해행위 금지 >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70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2202870)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공항이용객의 출입·통행 방해행위 금지(안 제56조제6항)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국토교통부 의견	6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220287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출입 및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6항제4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공항이용객의 출입·통행 방해행위 금지(안 제56조제6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6조(금지행위) ① ~ ⑤ (생략)	제56조(금지행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u>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u>
⑦ (생략)	5. ----- <u>제4호까지의</u> ----- ----- -----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지난 7월 유명배우의 출국 과정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게이트 자동문 및 게이트 앞 에스컬레이터를 통제하고, 승객의 항공권을 확인하며, 취재진 등에 대하여 강한 플래시를 사용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내 과잉경호 사건이 발생하였음.

【 인천공항 내 과잉경호 사건 개요 】

- 2024.7.12. 인천공항 T2 출국과정에서 사설 경비업체의 과잉경호 발생 개요
 - 여객터미널 커브사이드 2번 게이트 자동문 통제
 - 항공사 라운지 에스컬레이터(출국장 249번 게이트 앞)에서 승객 통제 및 항공권 확인
 - 사진 촬영 중인 취재진 등 주변을 향해 강한 플래시 사용

자료 : 국토교통부

위 사건과 같이 경비업체 경호원의 경우 「경비업법」¹⁾은 경비업자는

1)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사²⁾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해당 경비업체 대표 등 4명을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의 경우 외에도 단체여행객이 여객터미널 내 많은 짐을 두어 통행을 방해하거나, 특정 단체의 불법 집회로 인하여 통행 방해가 발생하는 등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공항시설법」 상에는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제2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2) 스포츠조선, '황제 경호 논란' 변우석 경호업체 대표 등 4명 결국 입건, 2024.8.16.

<https://sports.chosun.com/entertainment/2024-08-16/202408160100122740016086>

이에 개정안은 「공항시설법」 제56조제6항 각 호3)에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등4)(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승인 없이는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방해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3)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⑥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영업행위
2.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법 제5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노숙(露宿)하는 행위
2.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광고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 기부를 요청하거나 물품을 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5. 공항의 시설이나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6.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버리는 행위
7. 무기, 폭발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휴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공항 내의 사업자 또는 영업자 등이 그 업무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불을 피우는 행위
9. 내화구조와 소화설비를 갖춘 장소 또는 야외 외의 장소에서 가연성 또는 휘발성 액체를 사용하여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등을 청소하는 행위
10. 공항운영자가 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가연성 액체가스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1.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2. 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3. 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 정비 또는 시운전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4. 내화구조와 통풍설비를 갖춘 장소 외의 장소에서 기계질을 하는 행위
15. 휘발성·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격납고 또는 건물 바닥을 청소하는 행위
16. 기름이 묻은 걸레 등의 폐기물을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보관용기에 담거나 버리는 행위
1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공항이나 비행장에 진입시키는 행위

4) 「공항시설법」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폐지·재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는 공항시설의 사용을 휴지(休止)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동법 제56조제7항⁵⁾은 제6항 위반 시 제지 또는 퇴거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7조의2⁶⁾는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긴급하게 통행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항 내 시설의 수리 또는 청소를 위하여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법 제56조제6항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⁷⁾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승인 없이 금지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의 개정을

5)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⑦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6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去)를 명할 수 있다

6) 제67조의2(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7)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⑥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영업행위
2.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통해서도 입법목적이 달성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없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동의하고, 같은 조항에서 금지하는 영업행위 및 시설 무단 점유행위 등과 처벌수준(벌금 20만원 이하)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80